

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
**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**  
(요약문)

2021. 7

## 1.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#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과거 진도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2001년 및 2010년 2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며, 2010년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진도읍, 군내면, 고군면, 의신면, 임회면, 지산면, 조도면 등 7개 읍·면에 산재해 있는 58개소, 연장 L=77.496km에 대하여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으나, 종합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, 소하천관련 설계기준, 수립 지침,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등이 변경됨.
-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형변경 등을 반영하여 진도군 관내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 등이 포함된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.

#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[별표2]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.

<표 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	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

### 1.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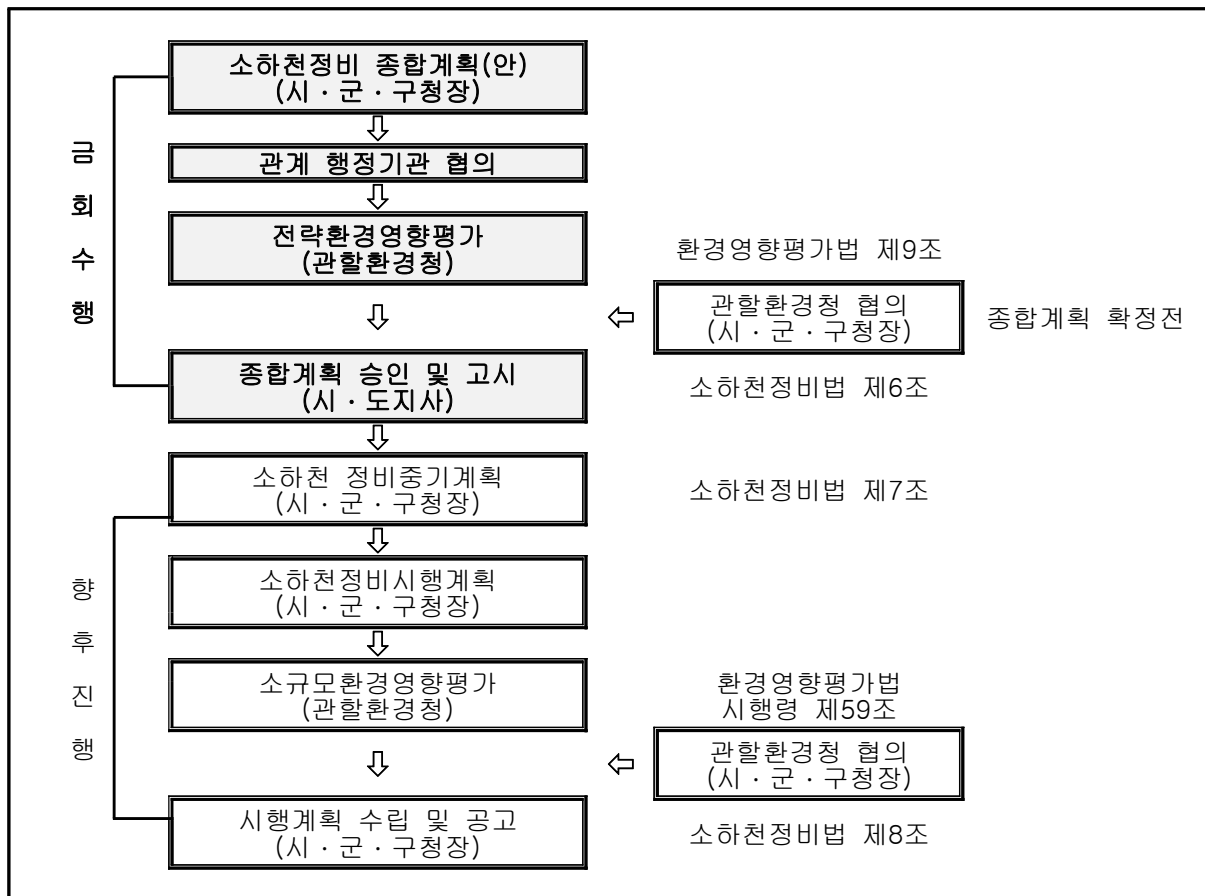
#### 가. 추진경위

- 2001. 11. 30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1차)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  - 48개소, 57.358km
- 2010. 8. 6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2차)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  - 13개소, 24.535km

- 2019. 7. 31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착수
- 2020. 2. 19 : 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- 2020. 10. :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
**나. 향후계획**

- 2020. 11. 25 ~ 12. 9 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15일)
- 2021. 6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작성 및 제출
- 2021. 7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·공람
  - 설명회(초안공람기간내, 설명회 개최전 7일전 1회이상 공고)
- 2021. 8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
- 2021. 10.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



<그림 1-1>

소하천정비계획 수립절차

## 1.4 계획의 개요

가. 계 획 명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

나. 위 치 : 진도군 관내 소하천 59개소(L=87.015km)

다. 계획수립기관 : 진도군

라. 승 인 기 관 : 전라남도

마.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총괄)

구 분	기 고시(①)		변경(안)(②)		증감(②-①)		비 고 (주요사유)
	개소수 (개)	연장 (km)	개소수 (개)	연장 (km)	개소수 (개)	연장 (km)	
진도군	58	77.496	59	87.015	+1	+9.519	연장조정없음 : 31개소 연 장 조 정 : 18개소 신 규 지 정 : 10개소 폐 지 : 9개소
진도읍	6	9.756	4	7.542	-2	-2.214	폐지3개소, 신규지정1개소
군내면	7	7.936	5	6.951	-2	-0.985	폐지2개소
고군면	7	6.041	6	7.243	-1	+1.202	폐지1개소
의신면	10	15.269	12	20.486	+2	+5.217	폐지1개소, 신규지정3개소
임회면	12	18.443	16	23.915	+4	+5.472	폐지2개소, 신규지정6개소
지산면	11	15.829	11	15.079	-	-0.750	변경없음
조도면	5	4.222	5	5.799	-	+1.577	변경없음

<표 2-1>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총괄표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변경후 연장(km)	비고
진도군			폐지 9개소, 신규지정 10개소 / 증 9.519km → 59개소	77.496	▲9.519	87.015	
진도읍			폐지 3개소, 신규지정 1개소 / 감 2.214km → 3개소	9.756	▼2.214	7.542	
	-	당동천	대부분 복개(상류 170m 제외)	1.022	▼1.022	-	폐지
	1-01	월평천	중점 유로 변경 및 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718	▲0.145	1.863	증
	-	송현천	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	0.931	▼0.931	-	폐지
	-	남산천	지)남동천과 중복지정	1.133	▼1.133	-	폐지
	1-02	매향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2.182	▼0.073	2.109	감
	1-03	수역천	변동 없음	2.770	-	2.770	-
	1-04	복상천	복개부 상류구간 지정	-	▲0.800	0.800	신규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변경후 연장(km)	비고
군내면	폐지 2개소 / 감 0.985km → 5개소			7.936	▼0.985	6.951	
	2-01	나리천	제내지 보호를 위한 시점 변경	1.300	▲0.300	1.600	증
	2-02	대사천	대사양수장(배수갑문)까지 종점 변경	2.374	▲0.140	2.514	증
	2-03	신동천	변동 없음	0.769	-	0.769	-
	2-04	송산천	변동 없음	0.462	-	0.462	-
	-	월가천	중·상류부 산지 및 복개, 지정기준 미달	1.025	▼1.025	-	폐지
	2-05	정자천	변동 없음	1.606	-	1.606	-
	-	둔전천	전구간 복개, 지정기준(연장, 하폭) 미달	0.400	▼0.400	-	폐지
고군면	폐지 1개소 / 증 1.202km → 6개소			6.041	▲1.202	7.243	
	3-01	석현천	지방하천 군내천 중복구간 제외	1.600	▼0.500	1.100	감
	3-02	고성천	상류 사방댐 직하류로 시점부 변경	0.514	▲1.886	2.400	증
	3-03	벽파천	남해 방류부 까지 종점부 변경	0.845	▲0.311	1.156	증
	3-04	연동1천	변동 없음	0.439	-	0.439	-
	3-05	연동2천	변동 없음	0.843	-	0.843	-
	-	마산천	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	0.495	▼0.495	-	폐지
	3-06	회동천	변동 없음	1.305	-	1.305	-
의신면	폐지 1개소, 신규지정 3개소 / 증 5.217km → 12개소			15.269	▲5.217	20.486	
	4-01	사상천	변동 없음	0.400	-	0.400	-
	4-02	돈지천	변동 없음	1.307	-	1.307	-
	4-03	연주천	변동 없음	1.237	-	1.237	-
	4-04	응덕천	변동 없음	2.177	-	2.177	-
	4-05	신정천	변동 없음	1.905	-	1.905	-
	-	죽청천	전구간 원두천에 포함	0.828	▼0.828	-	폐지
	4-06	원두천	중류 저수지 및 죽청천 하천유로 포함	2.412	▲1.590	4.002	증
	4-07	가단천	변동 없음	1.383	-	1.383	-
	4-08	만길천	변동 없음	2.800	-	2.800	-
	4-09	논수굴천	변동 없음	0.820	-	0.820	-
	4-10	운림천	-	-	▲0.888	0.888	신규
	4-11	사천천	(지)의신천 제외구간	-	▲2.024	2.024	신규
	4-12	사곡천	(지)염대천 제외구간	-	▲1.543	1.543	신규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변경후 연장(km)	비고
임회면		폐지 2개소, 신규지정 6개소 / 증 5.472km → 16개소		18.443	▲5.472	23.915	
	5-01	죽림천	변동 없음	1.232	-	1.232	-
	5-02	백동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2.164	▼0.044	2.120	감
	5-03	석교천	변동 없음	0.967	-	0.967	-
	5-04	송월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317	▼0.100	1.217	감
	5-05	귀성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041	▼0.140	0.901	감
	5-06	탑립천	상류측 사방댐 직하류로 시점 변경	1.100	▲0.050	1.150	증
	5-07	강계천	경지정리 현황에 따라 시점 변경	0.900	▼0.050	0.850	감
	5-08	연동천	여수로 하단 및 남해 유입부로 시·종점 변경	1.763	▲1.310	3.073	증
	-	사령천	지)고방천과 중복지정	1.497	▼1.497	-	폐지
	5-09	폐동천	변동 없음	2.577	-	2.577	-
	5-10	호구천	시정부 명슬저수지 여수로 끝으로 변경	2.650	▼0.610	2.040	감
	-	수장천	지)관마천과 중복지정	1.235	▼1.235	-	폐지
	5-11	봉상천	하폭 약 4 ~ 5 m / 시점 봉상저수지	-	▲1.425	1.425	신규
	5-12	송정천	하폭 약 3 ~ 5 m / 시점 소류지	-	▲1.273	1.273	신규
	5-13	상만천	하폭 약 3 ~ 5 m / 시점 진도예술인촌	-	▲0.652	0.652	신규
	5-14	아리랑천	하폭 약 3 ~ 5 m	-	▲0.610	0.610	신규
5-15	용호천	하폭 약 3 ~ 10 m / 시점 호구저수지	-	▲1.716	1.716	신규	
5-16	발골천	구) 지방하천 고방천	-	▲1.880	1.880	신규	
지산면		개소수 변동 없음 / 감 0.750km → 11개소		15.829	▼0.750	15.079	
	6-01	관마1천	변동 없음	1.600	-	1.600	-
	6-02	관마2천	변동 없음	0.958	-	0.958	-
	6-03	보전1천	변동 없음	0.805	-	0.805	-
	6-04	와우천	경지정리지구 중복 제외	2.217	▼1.487	0.730	감
	6-05	금노천	변동 없음	1.400	-	1.400	-
	6-06	가치천	변동 없음	1.582	-	1.582	-
	6-07	가학천	변동 없음	0.876	-	0.876	-
	6-08	보전천	저수지까지 시정부 변경	2.233	▲0.726	2.959	증
	6-09	외삼당천	변동 없음	1.311	-	1.311	-
	6-10	내삼당천	변동 없음	1.597	-	1.597	-
	6-11	행기미천	변동 없음	1.250	-	1.250	-
조도면		개소수 변동 없음 / 증 1.577km → 5개소		4.222	▲1.577	5.799	
	7-01	유토천	저수지 하류 남해안 유출부지점까지 소하천연장	0.957	▲1.577	2.534	증
	7-02	육동1천	변동 없음	0.996	-	0.996	-
	7-03	육동2천	변동 없음	0.647	-	0.647	-
	7-04	신전천	변동 없음	0.622	-	0.622	-
	7-05	산행천	변동 없음	1.000	-	1.000	-

(1)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근거

1) 신규 지정 대상 소하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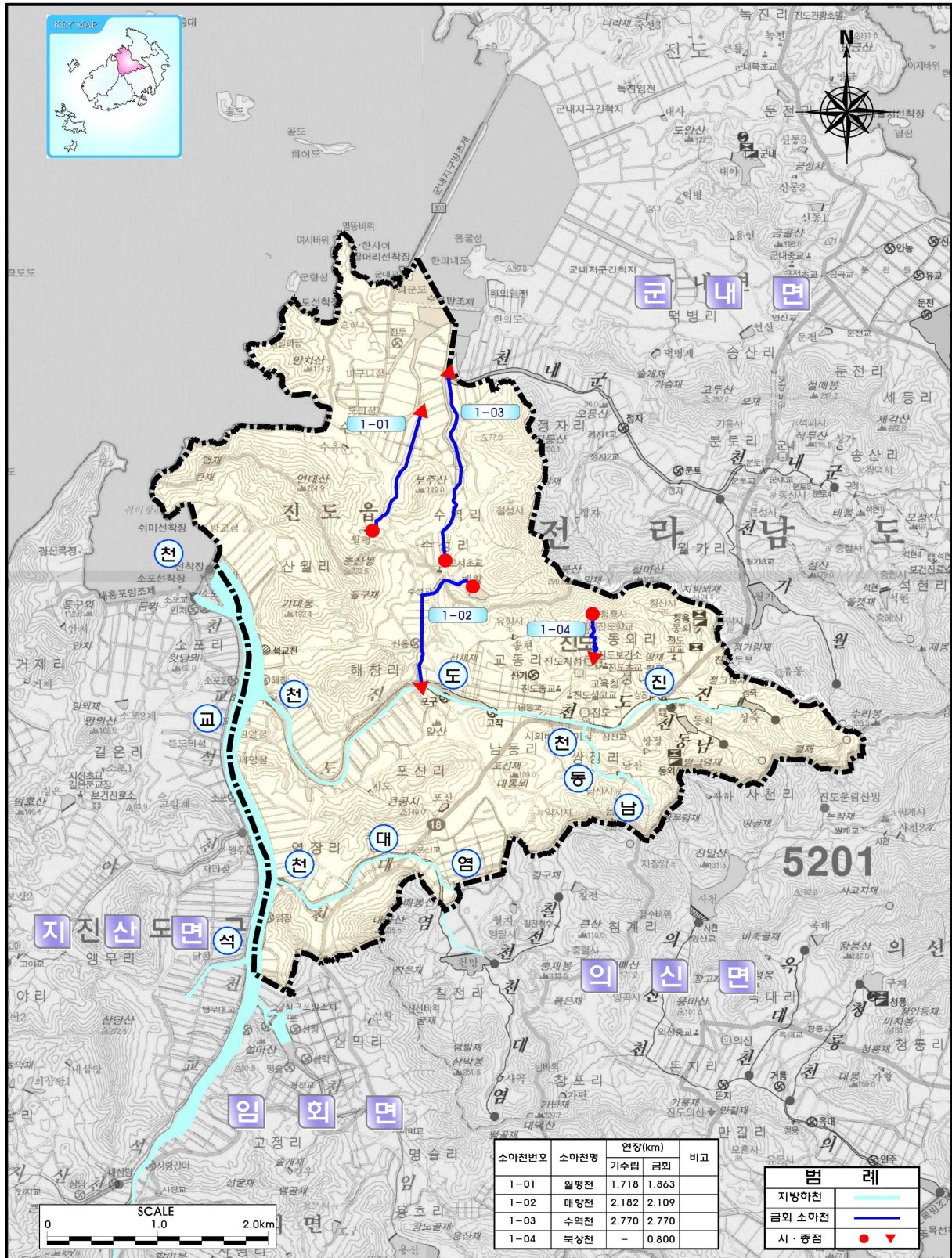
◦ 본 과업에서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 소하천은 현장조사, 지역주민 탐방 및 공공공람,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조사 또는 건의된 15개 하천 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지정 대상 소하천을 10개소 선정함.

<표 1-2> 신규 지정 대상 소하천 검토 결과

구 분	소하천명	위 치	개략 연장(km)	의견 제시 사항	대상 여부	기각 사유
진도읍	읍신규1천	해창리 일원	0.820	-	-	지정기준미달
	읍신규2천 (복상천)	교동리, 남동리 일원	0.800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군내면	군내신규1천	덕병리 일원	3.320	-	-	하류 2/3이상 농업생산기반 시설
고군면	고군신규1천	오산리 일원	0.340	-	-	소하천지정 기준미달
의신면	의신신규1천 (운림천)	사천리 일원	0.888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의신신규2천	사천리 일원	0.468	-	-	소하천지정 기준미달
	의신신규3천 (사천천)	사천리 일원	2.024	의신천(지) 제외구간	◎	-
	의신신규4천 (사곡천)	철전리 일원	1.543	염대천(지) 제외구간	◎	-
임회면	임회신규1천 (봉상천)	봉상리 일원	1.425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2천 (송정천)	봉상리, 석교리 일원	1.273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3천 (상만천)	상만리 일원	0.652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4천 (아리랑천)	상만리 일원	0.610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5천 (용호천)	용호리 일원	1.716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6천 (밭골천)	석교리 일원	1.880	현지조사, 관계기관 협의	◎	-
	임회신규7천	석교리 일원	0.740	-	-	하천구간 대부분 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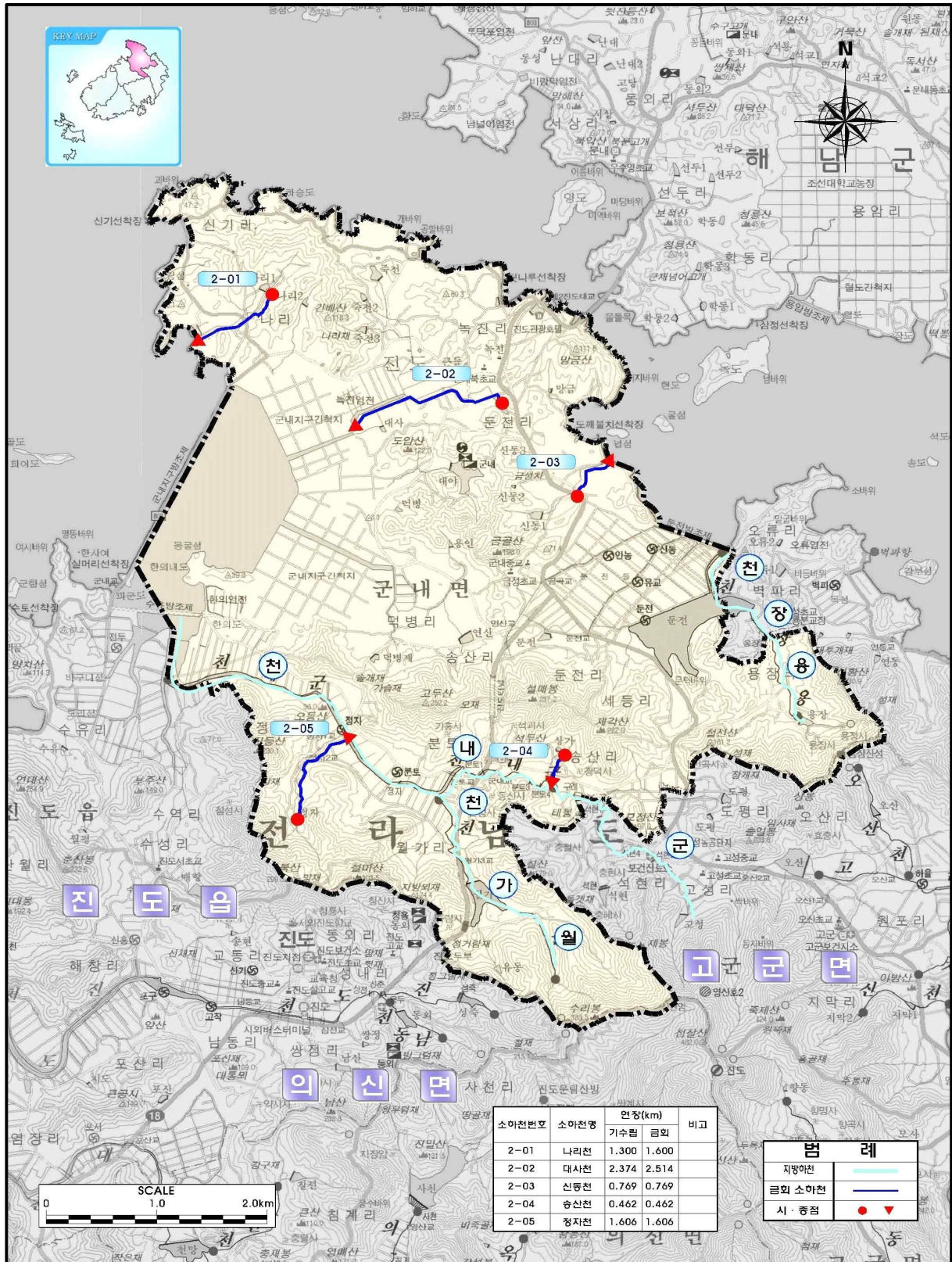
<표 1-3> 소하천 지정 및 변경·폐지 결과

구 분	소하천명	결과	주 요 사 유
진도읍	당동천	폐지	대부분 복개(상류 170m 제외)
	송현천	폐지	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
	남산천	폐지	지방하천 남동천과 중복지정
	읍신규1천	지정 불가	소하천 기능 없음
군내면	월가천	폐지	중·상류부 산지 및 복개, 지정기준 미달
	둔전천	폐지	전 구간 복개, 지정기준 미달
	군내신규1천	지정 불가	하류 2/3 이상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
고군면	마산천	폐지	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
	고군신규1천	지정 불가	지정기준 미달
의신면	죽청천	폐지	전 구간 원두천에 포함
	의신신규2천	지정 불가	지정기준 미달
임회면	사령천	폐지	지방하천 고방천과 중복지정
	수장천	폐지	지방하천 관마천과 중복지정
	임회신규7천	지정 불가	지정기준 미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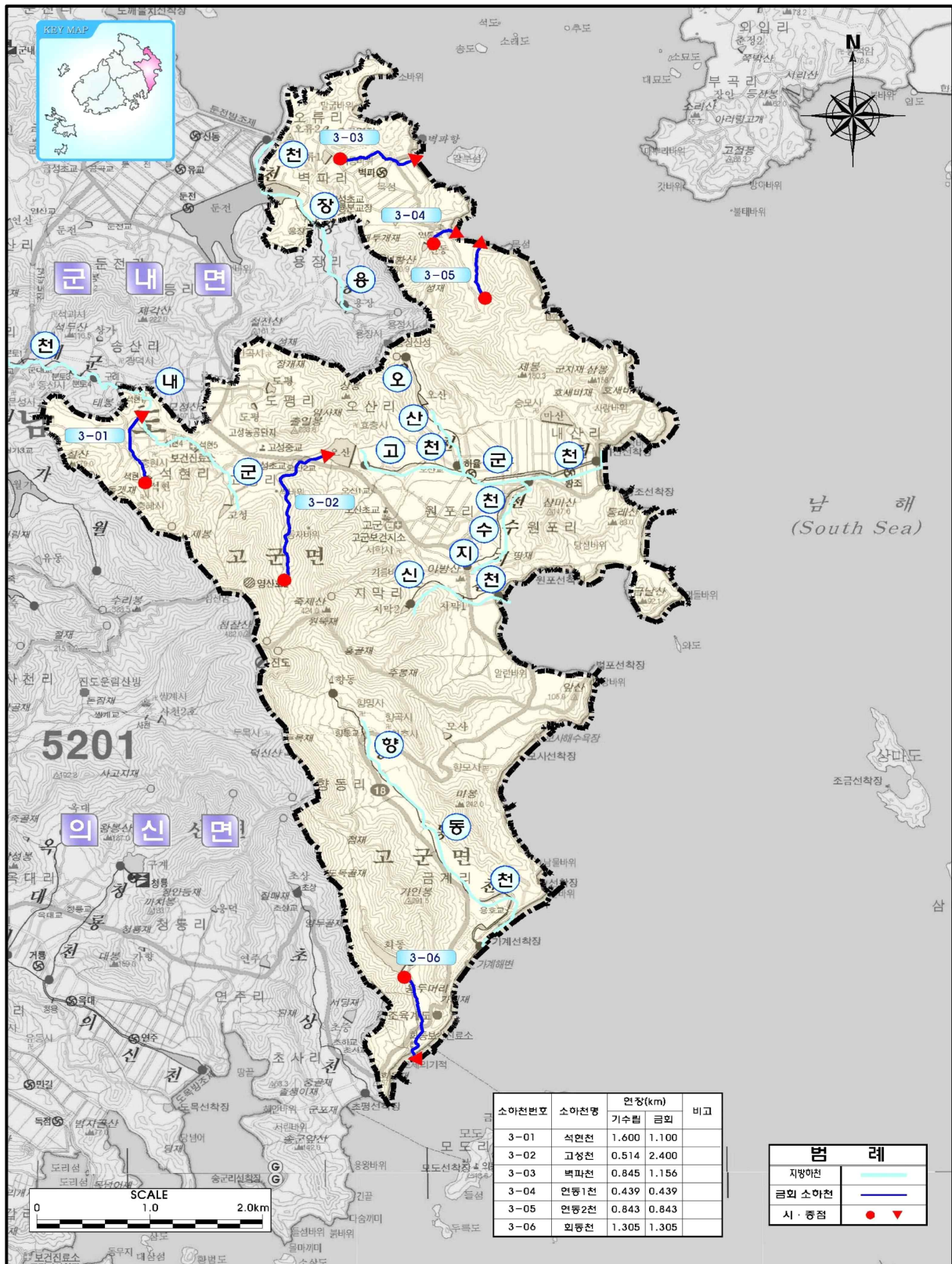
<그림 1-2>

진도읍 계획하천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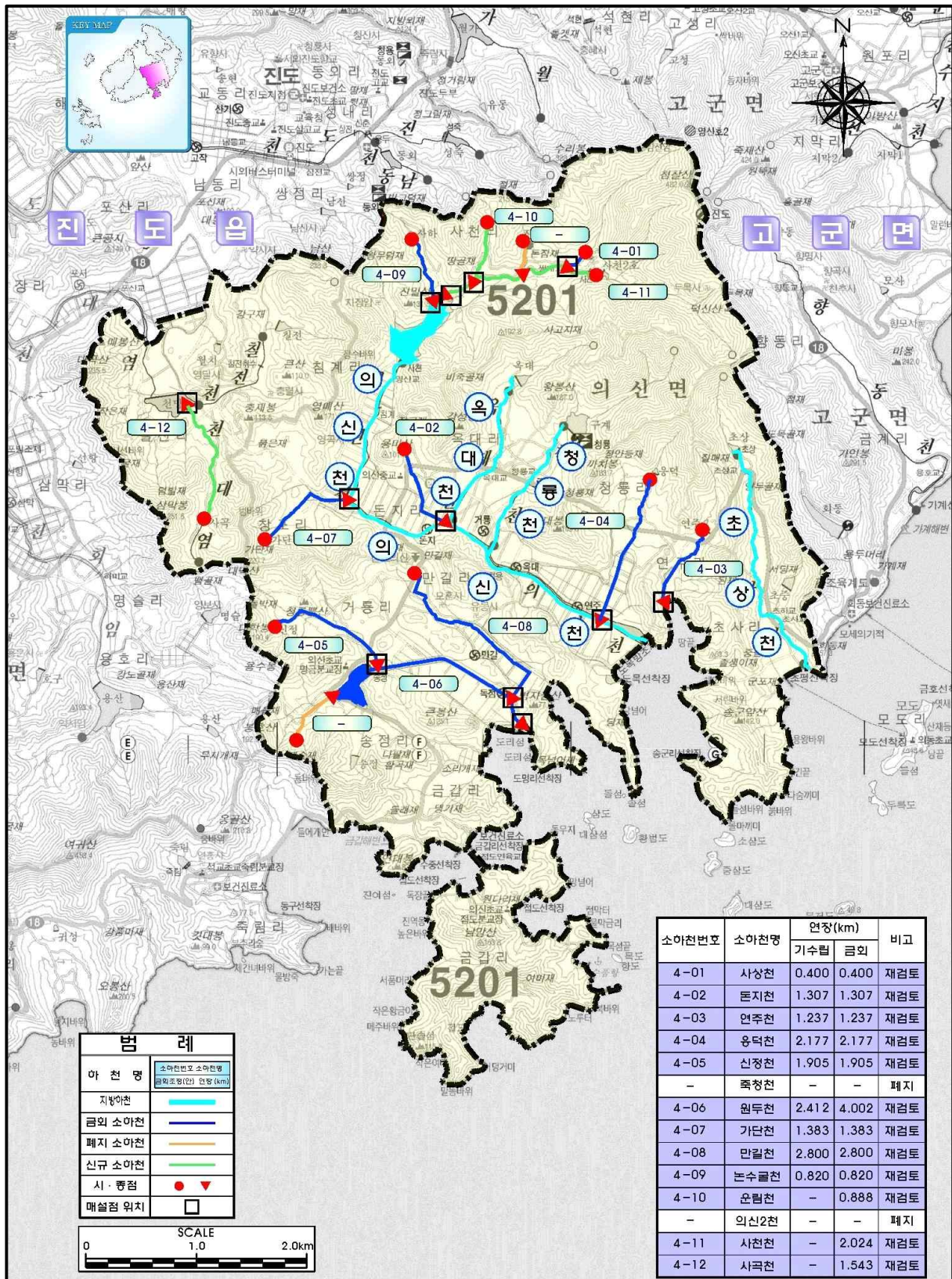
<그림 1-3>

군내면 계획하천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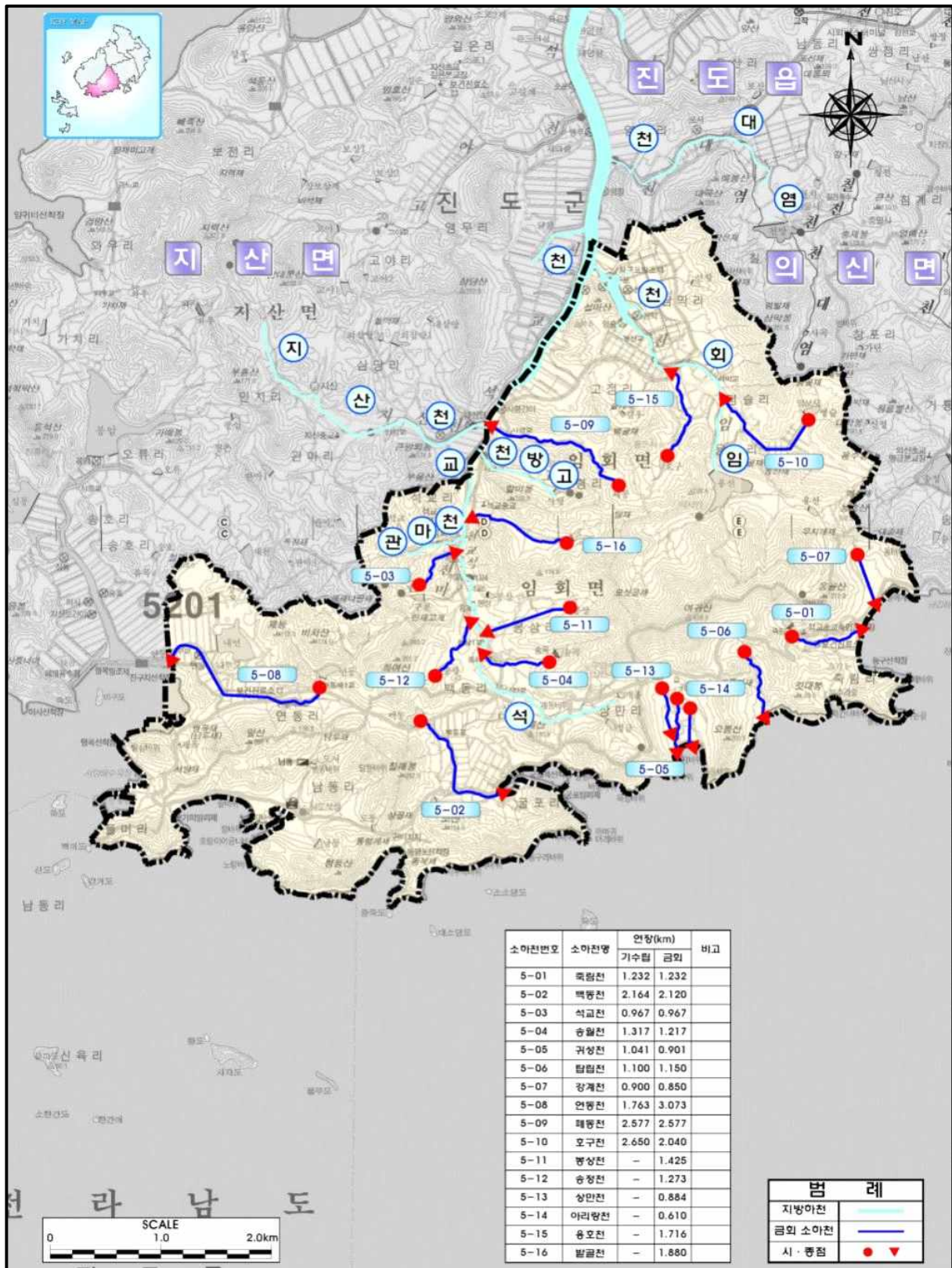
<그림 1-4>

고군면 계획하천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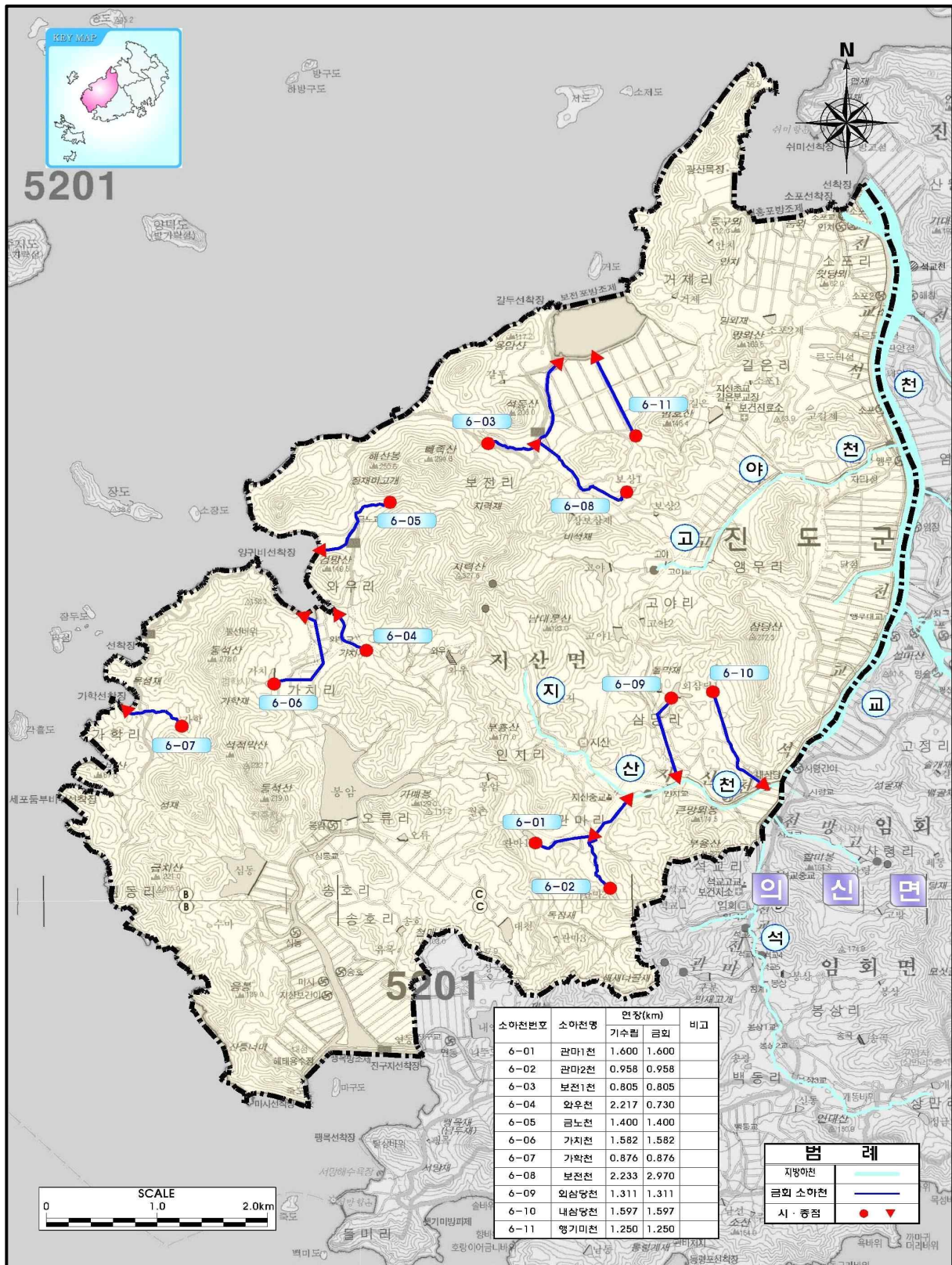
<그림 1-5>

의신면 계획하천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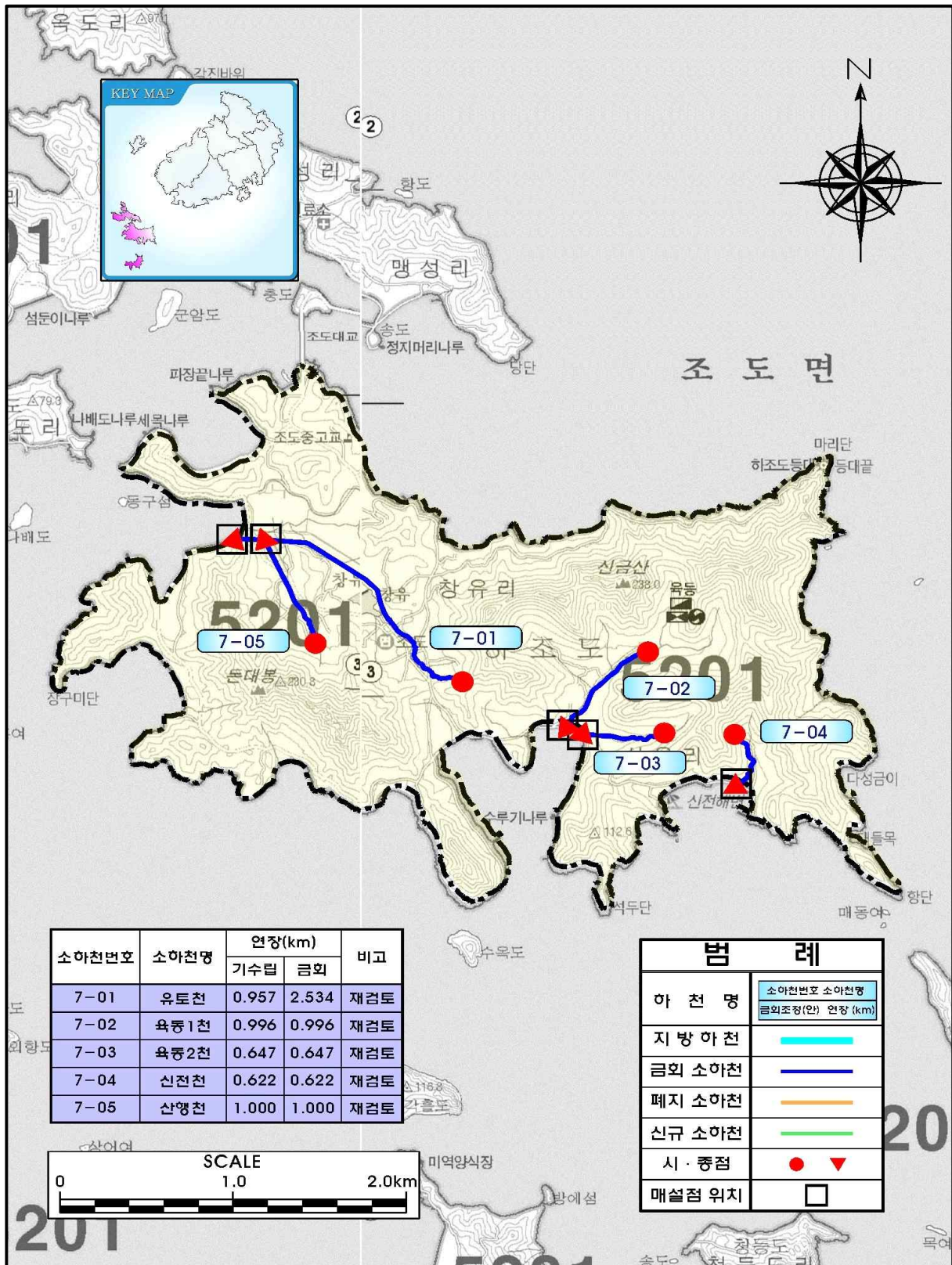
<그림 1-6>

임회면 계획하천 위치도



<그림 1-7>

지산면 계획하천 위치도



<그림 1-8>

조도면 계획하천 위치도

## 2. 지역개황

- 본 계획하천이 위치한 진도군은 생태자연도 1등급, 다도해해상국립공원, 야생생물보호구역 2개소, 상수원보호구역 4개소 등이 분포하며, 해당하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.

<표 2-1> 환경관련지구 지역 저촉 여부 검토결과

구 분		해당하천
생태자연도 1등급		◦총 12개(1-01 월평천 인접, 1-03 수역천 포함, 2-03 신동천 포함, 2-05 정자천 포함, 3-02 고성천 포함, 3-05 연동2천포함, 4-01 사상천 포함, 4-11 사천천 포함, 5-08 연동천 포함(시설물 계획 없음), 5-10 호구천 인접, 6-03 보전1천 인접, 6-04 와우천 포함)
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		◦다도해해상국립공원 1km이내(5-02 백동천, 5-08 연동천, 7-01 유토천, 7-02 육동1천, 7-03 육동2천, 7-04 신전천, 7-05 산행천) ◦습지보호지역 300m이내(2-03 신동천)
연안육역		◦총 21개(2-01 나리천, 2-03 신동천, 3-03 벽파천, 3-04 연동1천, 3-05 연동2천, 3-06 회동천, 4-03 연주천, 4-06 원두천, 4-08 만길천, 5-01 죽림천, 5-02 백동천, 5-05 귀성천, 5-06 탐립천, 5-07 강계천, 5-08 연동천, 5-13 상만천, 5-14 아리랑천, 6-04 와우천, 6-05 금노천, 6-06 가치천, 6-07 가학천)
환경관련지구 지역지정현황	상수원보호구역	◦4개소(상류부 수계에 분포하지 않음.)
	야생생물보호구역	◦1km이내 2개소(4-01 사상천,(0.31km 이격), 4-11 사천천(0.31km 이격))
	습지보호지역	◦진도갯벌(상류부 수계에 2-03 산동천 분포)
	생태경관보전지역	×
	환경보전(특별관리)해역	×
	수변구역	×
	자연공원	◦다도해 해상국립공원( 5-02 백동천, 5-08 연동천, 7-01 유토천, 7-02 육동1천, 7-03 육동2천, 7-04 신전천, 7-05 산행천)
	대기환경규제지역	×
	수산자원보호구역	×
	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	◦9개소(죽림-5-01 죽림천(0.07km 이격), 7-01 유토천 0.55km 이격)
	백두대간보호구역	×

### 3. 검토항목범위 설정

◦ 본 계획하천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특성과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 시 직·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,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.

<표 3-1> 평가 항목의 선정

구 분		평 가 범 위	평 가 방 법
생물다양성· 서식지보전	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변화에 따른 육상 및 육수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- 육상 및 육수 동·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예측 - 종 분포, 식생, 식생보전등급 변화예측
지형 및 생태축의보전	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-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-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유무
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-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
수환경 의보전	수질 (수리 수문)	◦계획하천 및 주변해역	◦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-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◦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·수문 변화
	해양 환경	◦계획하천 및 주변해역	◦ 본 계획수립에 따른 기수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에 따른 영향예측 및 조도계수 검토 ◦ 해양유입 소하천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
환경기 준의 부합성	대기질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-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	소음 · 진동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·진동발생 - 공사시 건설소음·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
	토 양 (하천 저질)	◦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◦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환경변화
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	◦계획하천	◦ 공사시 건설폐기물,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, 분뇨 발생 -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 및 적정처리대책 수립
환경친화적 토지이용		◦계획하천	◦ 계획시행 전·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파악

## 4.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

### 4.1 대안의 설정

- 대안의 선정은 『환경부고시 제2020-289호』(2020.12.22, 환경부) “『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(제23조 관련)[별표 4]에” 근거하여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함.
- 계획의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고려하여,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, 수단·방법, 수요·공급 등 총 3가지 측면에 대하여 비교·검토를 실시함.

### 4.2 대안별 환경영향

#### 가. 계획비교

구 분	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(Action)	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(No action)
토지이용 측면	◦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능	◦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저하(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)
수자원 이용측면	◦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	◦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, 하천 이용이 비효율적임
각종 보호지역 에 미치는 영향	◦ 보호지역 인근에 위치한 하천기본계획은 주변 생태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	◦ 미치는 영향은 없음
생태계훼손 가능성	◦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	◦ 생태계변화 없음
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	◦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◦ 지형의 변화 없음
자연재해 에 미치는 영향	◦ 계획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	◦ 자연재해(집중호우 등)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됨
쾌적한 생활환경 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	◦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에 따라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	◦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(현상태가 유지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)
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	◦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, 그 영향은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	◦ 경관변화 없음
환경기준 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	◦ 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, 공사후 원래의 환경질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	◦ 현상태의 유지로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
대안선정	◦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·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나, 홍수피해 예방 및 저감, 수자원 이용 및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 개발지침으로의 활용,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	
선 정	●	

나. 수단·방법

1) 홍수방어능

구 분	구조적대책	비구조적대책	구조적+비구조적대책
장점	◦ 계획규모에 따른 하천정비, 하도개수, 홍수조절지 설치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가 가능함	◦ 홍수예경보, 수방대책 운영 등을 통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인명피해 등은 방어가능 함	◦ 직접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가 가능하며 계획규모 초과시 홍수예경보 등을 통한 추가피해 방지도 가능
단점	◦ 계획규모 초과시 막대한 피해발생 위험이 있음	◦ 건물 및 토지등의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는 어려움	-
선 정	◎ (농경지 및 산지소하천)	-	◎ (주거지 관류 소하천)
선 정 사유	◦ 계획규모를 초과하거나 시설물 능력 이상의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 모두 적용		

2) 하천공간관리

구 분	보전지구	복원지구	친수지구
개념	◦ 환경생태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거나 역사·문화 고유성이 높은 지역 또는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	◦ 하천 고유의 가치가 자연적·인위적 요인으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건전한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 지정	◦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지정
장단점	◦ 하천의 과도한 이용을 지양하고 오염 및 교란에 대한 예방 가능	◦ 생태계 및 상하류의 공간적 연속성 및 하천의 가치 회복 가능	◦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수변 경관, 정서함양 등 하천의 친수기능 향상
선 정	◎ (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위치하거나 생태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구간)	◎ (축제 및 보축계획을 수립한 구간)	없음
선 정 사유	◦ 소하천별 고유특성(치수, 이수, 환경, 경관, 친수, 역사, 문화 등)의 보전 및 복원이나 하천구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의 이용이 필요한 지역 등을 기초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공간 구분을 실시하겠음.		

다. 수요·공급

1) 설계강우빈도

구 분	설계빈도 30년	설계빈도 50년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년 빈도 대비 계획홍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개수계획시 계획하폭 및 계획제방고가 낮아져 최소한의 치수계획 수립이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상강우 및 극한홍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여 제내지 피해 최소화 가능</li> </ul>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 및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어려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0년 빈도 대비 계획홍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계획하폭 및 계획제방고가 높아져 개수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</li> </ul>
선 정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◎ (산지 소하천 적용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◎ (주거지 및 농경지 관류 하천 적용)</p>
선정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천설계기준(2019, 한국수자원학회), 소하천설계기준(2020, 행정안전부),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및 소하천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도를 결정하였으며,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홍수 및 돌발집중 홍수에 의한 피해증가 추세까지 고려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를 관류하는 소하천의 경우 50년 빈도를 적용하였고, 본류 지방하천의 계획빈도가 30년 빈도이거나 보호면적이 협소한 산지 소하천인 경우 30년 빈도를 적용하였음.</li> </ul>	

## 5. 결 론

-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수, 이수,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재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, 보전, 이용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계획 소하천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있고 환경목표에 부합하고 홍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하폭이 협소한 소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확폭 및 제방 축제를 수립하는 등 생태환경 및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.

